

충청북도농촌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76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1993. 1.

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□ 제안이유

농촌 지붕개량사업 및 농촌주택사업중 시범사업으로 태양열 이용 시설 설치에 용자하였던 자금 상황이 완료됨에 따라 현실에 맞는 조례 개정

□ 주요골자

- 농촌 지붕개량사업, 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한 농촌주택개량사업, 태양열 시범 주택개량, 변소개량 용자금 지원사업, 간이태양열 이용시설등 삭제

□ 근거법령 :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 지침(내무부)

□ 첨부

1. 충청북도농촌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부
2. 신구조문대비표 1부

충청북도농촌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(안)

충청북도농촌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개정한다.

제2조중 "지방개발사업과 주택개발 사업을 말하며, 주택개발사업은 주택의 개수, 개축, 신축(공영주택 사업 특별회계 소관 주택신축은 제외한다)"을 "농촌 불량주택개발사업"으로 한다.

제5조중 제3항 및 제4항을, 제2항 및 제3항으로하고 제4항을 다음과같이 신설한다.

④농촌 주택사업 특별회계 운영을위한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은 다음과같다.
장수관:건설도시국장, 부임장수관:주택과장, 수입금출납원:농촌주택계장으로한다.

제6조중 "시장, 군수가"를 "읍, 면, 동장이"로하고, "도지사"는 시장, 군수"로 한다.

제7조제1항중 "지방개발 및 주택개발"을 "농촌주택개발"으로하고, 동조 제2항중 "도지사"를 "시장, 군수"로 하며, 동조제3항제1호 내지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이 율: 년리 8%
2. 상환방법: 5년거치 15년 체증상환

제6조"별지 제1호 서식"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